

장묘제도의 현황 인식과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정민자 · 김명희
아동 · 가정복지학과

<요 약>

본 논고에서는 우선 장묘 제도의 현황 및 변화 양상, 의식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한다. 특히 앞서 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모범 사례와 지방행정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울산광역시의 장묘 제도의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매장중심의 관행은 전통적 관행이라 볼 수 없으며 장묘관행은 사회현실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해야 한다. 둘째, 종교와 묘지 관행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장묘관련 법률의 시행과 함께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화장률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장묘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선진국의 장묘관행을 통해 자연환경관리와 삶과 죽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 review of Present burial and cremation practices and the method of practicing improvement.

Jung Min Ja · Kim Myung Hee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Abstract>

This paper reviewed current situation and consciousness change of burial and cremation system. Also we describes practicing method on the basis of the questions. we suggested the burial and cremation plan of Ulsan City through introducing of the

way for advance of burial and cre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sent thinking about burial grounds is not traditional thinking and create serious problems. Therefore, thinking about burial should be changed by current situation.

Second, each religion has been the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burial and cremation culture. Also, role of religion unit is important factor.

Third, practicing the law about the burial and funeral, local president keep on making an effort and preparation to improve the funeral system.

Forth, because people prefer cremation when they die, the provision of crematoria and service facilities should be expended.

Fifth, the burial culture of advanced nations conserves the natural environment by promoting cemeteries for people who feel that practice is not culturally unacceptable.

I. 머리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명제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며, 시대에 따라 종교의식과 문화양식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다양하고 역사 속에 나타난 종교의 부흥과 국가 정책에 따라 죽음의 문제와 시신처리에 대한 의식, 즉 장묘 제도와 문화가 다양하게 표출되어왔다. 불교가 성행했던 고려시대에는 화장이 선호되었으나 유교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조선시대에는 매장이 성행하였다. 풍수지리의 명당에 의한 후손들의 기복사상으로 인하여 화장을 금기시하고 매장 중심문화로 만들어졌다.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에도 부활사상 역시 한국 사정에 응용되어 매장선호 형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매장관습으로 인해 해마다 20여만 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한 조사 결과에서는 1998년말 전국의 묘지는 2,300여만 기로 추정되며, 수도권에는 3년,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 환경문제, 묘지공간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감에 따라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매장위주의 장묘문화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화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 화장률은 괄목할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 동안 장묘문화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장묘관련 법률이 장묘문화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여론에 힘입어 1999년 12월 개정됨으로써 매장위주에서 화장·납골 위주의 장묘문화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또한 일련의 종교에 따른 신체관과 영혼의 의미, 저승관은 우리의 장례의식과 문화를 현재까지 “매장중심 문화”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새로운 차원에서 “화장중심”문화로 바뀌고 있다.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발족,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와 활발한 의식개

혁운동, 불교에서의 적극적인 납골당(현재는 추모의 집 등으로 불림) 유치, 기독교에서도 화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경기도에 대단지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전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최근 화장률이 점차 제고되고 화장장려방안으로 납골묘지의 보급이 관심을 끌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납골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서울특별시가 시립화장장내에 설치한 현대식 납골당, 한국장묘연구회가 개발한 수장식 납골묘, 불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탑공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실용신안 특허를 획득한 한국형 납골묘, 한국장묘연구회(인천지회)에서 개발하여 인천시 장묘관리사무소가 분양한 매장식 가족납골묘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일련의 민간중심운동과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12월에 개정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건설교통부도 묘지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협오시설”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일련의 행정소송도 민원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장묘와 관련한 제도적 발전을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본다.

유사한 문화권의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화장제도를 오래 전부터 생활화하였다. 일본은 매우 오래 전부터 화장과 납골당 제도를 유지해 왔으며, 정부가 앞장서서 법적 제도적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화장 유인책을 실시하였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도심지 안이나 또는 근교에 납골당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1956년 모택동의 화장 원칙에 대한 지시 이후 공직자들의 경우 화장을 공식화하였다. 주은래, 모택동 등 중국의 지도자들 모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범을 보였으며, 덩소평도 사망 후 화장하여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복숭아밭에 뿌려졌다. 특히 SK그룹 최종현 회장의 “화장유언”과 함께 지도층 인사들의 “화장서약운동”은 우리에게 화장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줌으로써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모습들에 대해 제고하게 되었다.

“산 자를 위한 공간”과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승화될수록 우리가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야할 것인가, 영혼의 고귀함과 가족의 영속성과 인간적 사랑을 살아있는 동안 느끼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숙고하게 된다.

본 논고에서는 우선 장묘 제도의 현황 및 변화 양상, 의식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천적 방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모범 사례와 지방행정상에도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울산광역시도 장묘제도의 실천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장묘관행과 장묘관련 법 현황

1. 한국의 장묘관행

1) 삼국시대이전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분묘 형태는 고인돌이며 이것은 기원전 10세기부터 3세기까지 유행한 공공납골소로 추정한다. 이것은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삼국시대이전의 장묘제도 특징은 이중장제(二重葬制)와 공동묘지제이다. 이중장제란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했다가 탈옥후에 유골만 수습하여 관속에 넣는 것이며, 공동묘지제는 사후에 유골을 수습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한 관 속에 함께 들어가는 가족묘 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삼국,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매장을 하였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가 들어와 화장제도가 성행하였다. 화장후에는 그 뼈를 뿌리거나 매장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이 사찰내의 부도형태이다.

3)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불교식인 화장제도와 풍수지리식, 유교식의 매장문화가 공존했던 시기였다.

4)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유교, 풍수지리영향을 받았으며, 승유억불정책으로 화장을 금하고 매장제를 강력히 시행하였다. 특히 사당을 모셨으며 제사를 지내는 등 조선후기에 와서는 묘지풍수 신앙이 신봉되어 이때부터 선산제가 도입되었다. 그 후로 묘역이 넓어졌으며 호화분묘가 나타났다.

5) 식민지시대

조선총독부가 1912년 “묘지, 화장장, 매장 화장 취제규칙”을 공포함으로써 매장보다는 화장을 권하고 매장 시에는 신고하고 공동묘지를 이용하도록 권장하였다. 그후에 1934년의례준칙, 1940년에 “묘지규칙”을 개정하여 매장에 대해 허가제로 바꾸기도 했다. 여기서 화장을 반민족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매장문화가 선호되는 결과를 주기도 했다(장철수, 1999).

6) 현대

1961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68년, 1973년, 1981년에 개정을 하고 2000년 “장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매장문화로 인한 심각한 묘지난과 화장·납골문화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작업을 한 것이다. 특히 납골당, 화장장의 시설현대화, 공원화를 통해 주민 복지 시설로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각 지방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다(김현준, 2000).

여기서 우리는 유교와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매장제 장묘관행이 우리의 전통관습으로 지켜져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장제가 우리의 본연의 장묘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사회문화정책에 따라 발전시켜온 것이다.

장묘문화는 오랜 기간 우리 생활속에서 형성되어온 관습이며 종교 등 사회, 문화적 속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시에 변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일련의 정책시행을 통하여 국가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과 국민의식개혁을 통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산 자와 죽은 자가 화합하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과 효율적인 유습을 남겨야 할 것이다.

2. 종교와 장묘관행

장례에 관한 사회문화적 의미는 인간이 한 평생을 살면서 태어나고 죽게 마련인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통과의례이다.

<관·혼·상·제>에서 표현되듯이 죽음이 우리 삶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관계를 분리하고 애도함으로써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죽음이 우리 삶에 화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장묘제도는 바로 사람들의 생사관(生死觀)을 반영하며, 영혼에 대한 인식과 조상의 관계 등은 바로 종교적 신앙과 관련되어 왔다.

불교에서 죽음은 윤회와 환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며, 윤회의 굴레 속에서 부모자식간에 인연이 있으며 그 인연이 다하면 서로 헤어져 가는 자연스런 과정이다.

따라서 영혼은 이승과 저승에서 지속되지만 인간의 육신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정신과 육신이 분리되면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 육신은 이승에서 깨끗이 태워 사라지고 순수한 영혼이 환생의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적인 장례의식에는 화장의식과 49제 등의 중요 의식절차를 가지며 화장한 후에 뼈를 분쇄하거나 모아 처리하는 다양한 납골형식이 있다(이필도, 1998, 사자의 서, 1999).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이며, 불멸하는 영혼은 신과 인간사이에서 존재한다. 특히 부활사상이 강했던 중세시기에는 매장 관습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영혼의 불멸은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 뒤, 유럽교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화장을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화장운동을 장려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1997).

전통적인 유교사상은 사람이 죽으면 혼기(魂氣)는 하늘로 올라가고 형혼은 땅으로 돌아가므로 죽은 자의 존재 유무보다는 자손으로서 선조에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삶과 죽음을 동일시하는 영혼불멸사상에 근거를 두므로 제사를 통해 더욱 조상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게 된다.

특히 다양한 무속과 민속신앙은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풍수지리사상은 명당의 개념과 함께 조상의 음덕이 3대를 미칠 정도로 조상의 혼과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대다수의 종교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영혼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종교적 관념과 죽음과의 관계에서 장례의식과 묘지관행이 깊은 관련을 가지고 왔다.

그렇지만 전세계적으로 인구가 팽창하고 있으며 죽은 자와 산 자와 공간에 대한 문제는 점차 영혼의 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제는 산 자에 대한 죽은 자의 배려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종교의 의미가 더욱 가치를 가져야 할 시기이며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 바로 설 때 우리는 육신과 영혼의 문제를 승화할 수 있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화장운동과 맥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시대를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죽음과 삶의 방향, 구체적인 죽음의 방식과 처리절차들도 안정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종교가 수용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엔 각 종교단체마다 실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이 많다고 본다.

현재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화장중심 납골형 공원 조성은 팔목할만한 발전이라고 본다. 또한 각 종묘를 중심으로 가족형 납골묘를 만들어 (경주 월성 손씨의 예)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산 자에 대한 죽은 자의 배려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3. 장묘 관련 법 개정현황

우리나라는 사회 각 분야의 급속한 변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관련된 장례문화는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시대변화에도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장례를 가정의례의 하나로만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묘지면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묘지난을 겪고 있으며, 묘지면적의 증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복지의 관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장묘문화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장묘관련 법률이 장묘문화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여론에 힘입어 1999년 12월 개정됨으로서 매장위주에서 화장·납골위주의 장묘문화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면적의 축소, 시한부 매장제도의 채택, 벌칙강화 등 현행법률에 비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고,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해준다.

우선 본 개정법과 비교한 자료를 참고해 보면 <표1>과 같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분묘의 점유면적을 집단묘지 9평에서 3평 이내로, 개인묘지 24평에서 9평 이내로/ 화장장·납골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사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료를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장례예식장 영업의 영업 신고제를 폐지하고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한 내용들이다(김현준, 2000).

<표1>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법의 명칭 -명칭 -편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총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7장 38조 부칙 5조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1기당 20㎡(6평)이내 합장은 25㎡(7.5평)이내 ※묘지면적 -집단묘지:30㎡(9평)이내 -개인묘지:80㎡(24평)이내	면적 축소 -집단묘지:10㎡(3평)이내 ※합장시:15㎡(4.5평)이내 -개인묘지:30㎡(9평)이내
분묘의 설치기간	신설	분묘의 기본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 가능(최장 60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
공설장묘시설 설치	시·도 및 시·군의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 의무 설치	공설 납골시설 설치 의무 추가 자치구에서도 화장·납골시설 설치의무 추가
국고보조 등	신설	공설의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설치시 국고보조 근거 마련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 마련
불법분묘 정비	신설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승락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배제 불법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법의 실효성 확보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벌칙강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폐쇄 또는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근거 마련 -과징금 처분 근거 마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범위	신설	-국립묘지 적용배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으로 지정된 분묘는 점유면적, 설치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행정규제의 완화 -화장장, 납골당 설치 -시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산림법에 의한 별도의 산림훼손 허가 -시체운반법	-화장장, 납골당 설치시 시·도지사 허가 -시·도지사 고시제 -묘지 면적인 80㎡(24평)를 초과하는 경우 산림법에 의한 별도의 산림훼손 허가 -시·도지사 허가	-신고제로 완화 -신고제로 완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묘지 등 설치 허가시 입목벌채 등 허가의 의제 처리 -시체운반법 허가제를 폐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로 일원화

특히 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묘지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까지 선진국처럼 따라 갈 수는 없

지만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고 가족납골묘의 이용, 납골시설의 장려,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 가장 큰 핵심은 묘지시한부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묘적부를 만들고, 지방행정에 묘지관리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점이다. 즉 지방행정부에서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역마다 죽음의 복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3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시장, 구청장, 군수가 자체묘지 수급계획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체 재정 계획을 세워 죽은 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2001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의 편성, 시민 의식개혁운동, 홍보, 남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선진 시설등을 견학하고 미래 지향적인 묘지공원화 등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표2> 지방자치단체의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3조)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하여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중·장기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추이 등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 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제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 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수급계획에 따라 자체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Ⅲ. 장묘 제도의 현황

1. 한국의 현황

1) 묘지현황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생활개혁범국민실천협의회에서 공동연구한 보고서(1998)에 의하면, 한국의 사망자수의 증가로 1997년 장례건수는 253,000명에서 2000년에 285,000명 2010년에는 385,000으로 추정하며, 1997년 장례건수가 1일 평균 700건수로 추장하고 있다.

매년 20만개 이상의 묘지가 생겨나고 현행대로 둔다면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묘지화 된다고 한다. 현재 묘지 면적은 전국토의 1%이며 묘지가 주거공간의 2배이다. 즉 우리 국민 1인당 평균주거 공간이 4.3평인데 묘지는 1기당 평균 19.35평으로 주거공간보다 무려 4.5배가 큰 것이며 전체 인구로 환산한 주거공간(1억9천3백 50만평)에 비해 무덤이 차지하는 면적(3억8천 7백만평)으로 2배로 본다(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1998).

또한 전국의 분묘수는 2천만기로 주로 개인묘지로서 전체 묘지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묘지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대부분 산에 조성하는 묘지 때문에 산림이 계속 훼손되고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토지만 점유한 채 버려진 분묘가 전체 묘지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연구원, 1998).

산림청 집계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7년 상반기말까지 농지, 초지, 택지, 공장,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조성등의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 면적이 무려 1억 2천 663만평에 이르는데 그 중 묘지로 전용된 산지는 129만 9천평이나 되어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이 심각하다.

이는 묘지로 인해 생활·자연공간의 감소, 비효율적 국토이용, 환경과 자연경과 훼손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화장률의 현황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의 억불숭유정책에 의해 화장이 금기시되어 왔으며,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후손이 없거나 무연고자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 그리고 묘지를 구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화장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장개협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의 화장장려 운동에 힘입어 최근 화장률의 증가는 놀랄만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1%가 화장을 찬성하였으며, 1998년 장묘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2%가 화장을 찬성하고 있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1999)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본인, 가족, 타인의 화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이상이 찬성하였다. 또한 서울시(1998)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인사망 후 화장에 대해서 66.8%가 찬성하였다. 이와 같이 화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1971년 7.0%에서 1980년 13.9%, 1990년 17.5%로 해마다 1% 내외로 증가해 오다가 1997년에는 22.9%, 1998년에는 27.7%, 1999년에는 30.7%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1997년 29.6%, 1998년 36.2%, 1999년 41.9%, 2000년 1월에는 무려 55.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박복순, 2001). 화장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묘지공간의 부족과 화장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이 제고되어 1998년 부산시가 49.3%, 대전 42.5%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34.2%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한부 매장제 도입을 앞두고 오래된 조상묘지를 개장하여 가족납골묘지에 모시거나 개장유골을 처리할 경우 화장수요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률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저조한 편이다. 우리와 같은 문화권의 중국과 일본은 100%에 가까운 화장

를을 보이고 있고 유럽의 여러나라들도 화장률이 70%이상이다.

<표3>각국의 화장률 비교

구 분	한국	서울	일본	홍콩	영국	네덜란드	중국	대만	태국	미국
화장률(%)	30	55	97	72	69	98	100	47	90	21

3) 장례문화에 의식

매장을 위해 먼저 수의와 관등 값비싼 장의용품을 구입해야하며 묘지매입에도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매장에 따른 작업비, 석물, 잔디값, 관리비 등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장례비용의 추계를 보면 매장의 경우 한건 단 848만원(사설묘지기준), 화장 및 납골의 경우 매장비용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계층이 조상의 묘를 명당자리에 그것도 크고 호화롭게 꾸며 부나 권력을 과시하는 허례허식은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그러한 허례허식은 일반서민들에게까지 확대 재생산되는 악영향으로 미치고 있다.

최근 1년간 장례식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53.7%)이 대형병원 장례식장이었다고 응답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편리함으로 인해 대형병원 장례식장이 인기가 높음을 보여준다. 가정에서 치르는 경우는 24.6%에 불과하였다. 이현송 외(1995)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점차 감소하여 1985년 75.3%에서 1995년 37.5%로 감소한 반면에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9.6%에서 60.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집밖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아파트 중심의 도시생활에서 거주공간이 장례를 치르기에는 협소해졌으며, 시신(屍身)의 처리 및 문상객 접대의 편리성 때문에 병원영안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영안실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선택적인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이현송 외, 1995).

4) 화장 · 납골시설의 실태

우리나라의 화장시설은 서울, 부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에 분포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45개소가 있다. '매장과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시·군은 사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하고(제7조) 있으며,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화장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화장이후 유골은 일반적으로 산이나 강에 산골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동으로 산골할 수 있는 유택동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전국의 화장장의 연간 화장 능력은 19만 4천여구이지만 활용율은 50%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서울시의 경우엔 화장수요가 더 많은 관계로 오히려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기존의 화장장은 노후되어 있으며, 화장로나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화장장 역시 집단묘지 등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근접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화장시설의 미관도 형편없으며, 청결도가 문제가 많고, 화장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도 여러면에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직 화장장 자체가 혐오시설인 관계로 기능직이나 작업부로 근무하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생개협, 1999).

시설이 현대화 된 곳이나 민간 위탁된 경우(예, 부산 영락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식당, 매점 휴게실, 유족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들이 이용자 서비스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화장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 체계를 발전시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사설 화장장 설치도 가능할 뿐 아니라 구청 단위에서 화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므로 시설이 현대화된 화장장이 세워질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의 납골당은 49개 공설납골당과 20개 사설 납골시설이 있다. 대부분의 납골당은 공설화장장내 부속시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몇 개의 납골시설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이 빈약하고 노후하여 유골보관소의 기능밖에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화장을 기피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화장을 장려하고 화장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의 고급화, 다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납골시설로는 건축물인 납골당 외에도 옥외벽식납골시설, 납골탑, 납골묘 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왕릉식 납골당, 옥외벽식납골시설, 실내납골당의 개방형 납골당 설치, 한국형 가족납골묘 개발 보급등을 통해 납골시설의 선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가족주의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선산을 가진 경우가 있으며, 종친회, 조상숭배의식 등이 있는 관계로 가족형 납골묘에 대해 호의적이다 납골형태도 기존의 봉분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술미가 가미된 다양한 가족묘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시회, 홍보를 통해 대강 알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의 현황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묘관행은 그 나라의 종교와 사회문화의식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음에 관한 의식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 제한 된 국토, 한계적인 자원등을 인식한 선진국에서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묘지의 공원화, 매장묘지의 최소화, 화장시설의 최첨단화, 납골시설의 예술화, 사이버세계와 장묘, 죽음의 승화의식등을 통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다. 특히 죽음과 삶은 격리된 것이 아니며 산 자의 생활 공간안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표3>에서 보듯이 현재 일본의 경우는 97%화장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엔 100%이다. 이것은 모택동이 죽으면서 화장을 한 점도 있지만 법적으로 매장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매장중심이었던 보수적인 영국이 화장율이 높아진 것은 교회신부와 목사들의 화장

장려운동이 주효했던 점과 사회지도층의 모범적인 화장이 주효했다. 그 외에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도 교회의 노력에 의해 대다수가 화장을 선택한다.

여기서 미국이 화장율이 다소 낮더라도 그 나라의 묘지 공원은 1평 이내이며, 신분의 차가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묘지에 묻힌다. 화장을 한 경우에도 공원묘지에서 하나의 벽돌처럼 아름답게 장식되어 공원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다수 불교나 힌두교를 믿는 동양권에서는 거의 화장을 선택하고 있다. 즉 장례는 종교 의식에 의해 진행되며 시신의 처리 역시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에 혼재된 여러 종교와 전통적인 민속 신앙이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좁은 국토에 과중한 인구가 살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균형된 예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의 모델이 결코 우리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앞으로 효율적인 자연환경관리와 우리의 삶과 죽음이 아름답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든다면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한부 묘지제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미국이나 영국, 노르웨이 등의 묘지면적의 과감한 축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있는 묘지아파트, 납골아파트, 납골당의 명칭에 대한 예술성(일본, 대만 등),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공원화, 예술화, 시내중심지와 교통 요지에 위치한 납골당(일본, 유럽, 미국), 사이버장묘(일본), 유럽의 가족묘지, 납골묘의 응용, 죽음이후의 평등(미국, 유럽 등)의 철학과 정책을 도입하여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죽음과 관련된 복지를 다루는 이 시점에서 화장장려운동 등의 차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에서 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3. 울산광역시의 현황

울산광역시의 묘지시설 현황(아래 표4,5,6 참고)은 사설공원묘지 2개, 공동묘지 151개소, 사설묘지, 사설묘지 29개소이며 시립 묘지는 없는 실정이다. 공동묘원은 더 이상 수용불가능한 상태이고 사설묘지도 잔여기수가 얼마남지 않아 가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표4>공동묘지현황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개 소 수	151	8	1	2	21	119
면적(평)	384,154	13,776	1,040	6,802	65,020	297,516

시정백서(2000), 울산광역시.

울산공원묘원은 가용기간 약 6년, 삼덕묘원은 약 3년으로 2005년 후에는 더 이상 매장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울산묘원은 토지가 부족해서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상태이고, 삼덕공원묘지는 인근 주민의반대로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화장장의 경우는 울산 동구 화정동에 공설 화장장 1개소만이 있으며 시설이 낙후되어있고 하루 처리 능력도 16기밖에 되지 않는다. 화장장 사용료도 전국적으로 공설화장장이 그

렇듯이 저렴하여 화장사용료를 시민의 세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또한 납골 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유골처리 시설이 없어 산과 강, 바다 등에 잔재를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앞에 개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울산의 경우도 장기적인 장묘개선 계획과 묘지 수급 계획이 서야할 것이다.

<표5> 울산의 화장장 시설 현황

면적		주요시설			부대시설
부지(m ²)	건물(m ²)	화장로	적출물기	소각로	· 휴게실 : 144석 · 주차장 : 50대 · 급수대 1, 방송시설 등
7,539	581.17	4기	1기	1기	

시정백서(2000), 울산광역시.

<표6> 화장처리 현황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건 수	1,796	2,580	2,855	3,191	3,310	3,446
일일평균	4.9	7.1	7.8	8.7	9.0	9.4

시정백서(2000), 울산광역시.

장묘제도의 발전적 방안을 위해 민간기관이나 지방행정부에서도 시민들의 장묘관행과 의식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있다(서울특별시, 1997, 1998; 인천광역시, 1999; 대전광역시, 1999; 생개협, 1998; 울산 YMCA, 2000). 여기에서 울산시의 의식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묘지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88.6%). 연간 성묘횟수를 보면 연간 1-2회 정도 가는 비율이 58.4%이다. 이것은 거의 묘지를 방문한다고 볼 수 없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다수 묘지와와의 거리가 멀고 바쁘게 사는 생활 속에서 조상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외국의 경우엔 납골시설이나 묘지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또는 집 가까운 곳에 위치함으로써 자주 돌보며 방문을 하게 된다. 매주 금요일이면 가족과 함께 묘지를 돌보며 고인을 기리는 나라도 있다.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 조사결과(1998)에서는 매장보다는 화장(56.2%)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2000년 조사에서는 62.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장 중심의 의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화장후 유골처리방법은 현재 산에 뿌리는 경우가 울산에는 47.4%로 나타나지만 유택동산을 가진 화장장이나 납골당, 납골묘가 있는 서울의 경우엔 전혀 유골을 뿌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화장장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면 이러한 일련의 시설이 같이 갖추어져야만 하고, 지금이라도 유택당이나 유택동산을 마련하여 유골의 잔재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의 화장장에도 충분히 이러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풍수지리설을 믿는 비율은 울산의 경우 54.4%나 되며, 서울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게 나타나 그로 인한 매장의 유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IV. 장묘 제도 개혁 모범 사례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장묘 문제에 대해 남다른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2000년 현재 화장율 50%를 넘었고 화장시간 예약제 실시로 99%를 달성하였다.

또한 사이버 추모의 집을 개설하여 고인의 생전 모습, 활동상황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육성을 들을 수 있다. 애절한 사연을 이메일로 띄울 수 있는 <하늘나라우체국>을 운영하여 인기리에 이용되고, 그 결과는 책으로 출판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은 장묘 관련사업 기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납골기관을 잉이용할시에 15년 동안 이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이다.

또한 화장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고 피드백하고 있다. 즉 장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조사비를 책정하고 자료의 과학화를 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장묘시설 견학자를 위하여 3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말까지 4,000명이 견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묘 문화 홍보비디오 시청, 화장장과 각종 추모시설 소개 및 시찰, 장묘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납골시설을 밝고 아름답게, 한국의 정서에 맞게 개발하여 <추모의 집>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4개의 추모시설을 갖고 있으며 납골의 선호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고건 서울시장의 화장서명과 함께 민원봉사실에도 화장서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치하고 있어 앞으로 화장의 일반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는 영락공원의 설치와 민영화를 가장 큰 의미를 들 수 있다. 초기엔 주민의 반대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현재는 우수한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민영화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였으며 원스톱 종합 장례서비스가 가능한 모델 중의 하나이다. 병원이나 집에서 옮겨진 이후 장례를 위해 유족은 그 곳에 머무르면 화장까지 가능하다. 장례예식장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도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0년 8월 '장묘문화 및 납골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공립 납골시설을 완성하고 제2영락원을 만들어 화장을 한 경우 쉽게 납골 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율을 50%이상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민영화를 통해 흑자 재정으로 만든 것도 앞으로 장례문화의 질적 개선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모델이다.

3)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공원묘지에서 묘적부를 만든 점이다. 인천시의 경우도 민간위탁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오히려 시의 재정부담률이 낮아진 점이다. 민영화 이후로 가족 납골묘의 개발 및 분양, 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으며, 2001년부터 시립 추모의 집을 공원묘지에 설립할 계획이다.

4)기타

경기도의 경우는 묘지 수급계획을 위해 용역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을 하며, 특히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57개소의 공설묘지와 500개의 공동묘지를 2005년까지 5개 영역권으로 나누어 재개발하게 된다. 여기에 첨단화된 공원화와 함께 화장위주로 가기 위한 납골묘, 납골당, 휴식, 문화 공간을 겸한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시민의 이용이 많은 둔산공원에 납골묘 전시장을 전시하여 화장 및 납골에 대한 시민의 거부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공설묘지에 납골묘지를 개발하여 2003년부터 사용토록 할 예정이며 대규모도시개발 사업때에는 공원안에 납골공원을 조성하는 등 장묘시설이 주민복지시설로 인식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엔 시장이 직접 화장이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으며 민방위교육시에는 화장의 필요성을 강의하고, 시청에 납골묘 전시를 하고 있고, 화장유언서명을 시청민원실에 배치하여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2000년에는 한국장묘학회가 탄생하여 학제적 연구를 선포하였으며, 대학에는 서울보건대학에 장묘지도학과 설립되었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는 장묘문화 전공 분야가 설립되는 등 죽음의 복지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V. 맺음말

2001년부터 시행되는 장묘 관련 법률제정으로 인해 장묘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장묘제도의 현황과 인식을 살펴봄과 동시에 앞서 가고 있는 외국의 선진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식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은 유교와 풍수리지사상의 영향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문화가 오늘날까지 지켜져 왔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본연의 장묘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사회문화정책에 따라 발전시켜온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현실에 따라 장묘에 관한 정책은 융통성 있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종교적 관념과 장례의식, 묘지 관행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죽은 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대인 만큼 종교단체마다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보여진다. 죽음의 인식과 사후처리문제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관련되므로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의 각성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각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장묘문화개선운동이 행동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장묘관련 법률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여론에 힘입어 올해부터 시행됨으로써 매장위주에서 화장·납골위주의 장묘문화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법률 시행과 함께 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 시민의식 개혁운동, 홍보, 님비현상 예방들의 다양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단체장들의 의식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매년 20만개 이상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공간의 2배에 이른다. 그러나 묘지공간의 부족과 화장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화장장려운동에 힘입어 최근 화장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에 불구하고 아직은 장묘시설의 수급불균형과 시설의 낙후성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모범적으로 장묘정책 선진화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진국의 장묘관행을 보면 죽음과 삶은 격리된 것이 아니며 산자의 생활 공간안에 머물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문화권의 나라에서도 매장보다는 화장을 주로 선택하고 있었다. 외국의 모델이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 효율적인 자연환경관리와 우리의 삶과 죽음이 아름답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울산의 공동묘지와 사설묘지 가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실정이며, 1개소뿐인 화장장 역시 낙후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묘의식에 대해서도 묘지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울산시민 역시 화장에 대해서는 높게 찬성하고 있어 의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울산광역시의 장묘정책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장묘정책을 세우도록 강조하였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묘지수급계획과 그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묘적부 작성, 묘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행하여,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시와 의회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시립납골당(추모의 집) 하나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화장시설, 시립공원묘지의 부재, 모델 납골묘 전시장 하나 없는 가장 열악할 상황이다. 정책을 실현을 위해서는 대 시민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 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중앙정부의 지원과 시민의 협조가 동시에 요청되는 것이 장묘정책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전략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추세가 민영화가 되고 있는 관계로 민자유치를 통한 공동개발 방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특히 구청장이나 군수는 앞으로 그 구·군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묘지의 재개발, 납골묘지의 공원화 사업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셋째, 선진화되고 있는 장묘시설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한 울산의 경우, 행정 뿐 아니라 시·구·군의원, 시민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전국, 외국의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와 모범 사례들을 연구하여 미래 장묘 행정과 운영체계에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간단체와 종교계가 협조하여 운동차원에서 이룩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울산시에는 공설 화장장 1개소가 있으며, 묘지시설은 더 이상 수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잔여기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한정된 국토안에서 묘지부족은 더욱 심화되어 묻힐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간다. 화장장려운동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며, 화장을 희망하는 경우, 화장 후 유골처리방법으로 납골당, 납골묘 등의 납골시설을 희망하고 있었

다. 따라서 의식전환과 함께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고급화된 시설들이 수급되어야 한다. 화장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납골시설 수요는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임은 확실하며 이에 따른 수급계획이 필요하다.

다섯째, 앞으로 장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은 법을 기반으로 하겠지만 민간기관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꾸준한 홍보나 죽음과 장례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생존의 복지뿐만 아니라 죽음의 복지를 생각하고 생과 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생애론적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호스피스 봉사활동, 죽음준비교육, 생과 사의 의미 영혼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와 교육 속에 있는 것이다.

여섯째, 장례문화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종교, 여론, 사회지도층의 모범이 효과적이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매스컴과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사들이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보도, 사회지도층의 화장서약운동은 일반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또한 매장을 전통적인 관습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의 장례관행 또한 전통적인 관습으로 생각하고 있다. 장묘문화 개선에는 단지 매장을 화장으로 유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허례허식과 과소비를 간소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만이 진정한 장묘문화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장묘시설의 확충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시설의 현대화와 공원화이다. 녹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 납골시설을 갖춘 납골공원을 주거지 근처에 조성한다면 부족한 녹지공간 및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손들은 매일매일 산책하면서 집근처의 조상들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공원식 납골시설을 소개하고 산 자의 쉬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점을 널리 홍보하여야만 앞으로 혐오시설에 관한 인식을 벗을 것이다.

현재 울산광역시도 어쩔 수 없이 화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싼 묘지 비용과 장례식 비용, 묻힐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매우 필요하다. 산 자를 위한 공간과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시민운동이다.

여기서 우리는 장묘정책이 행정주도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민의 의식과 종교, 정치 지도자의 적극적인 지도활동, 사회문화전반의 통합된 체계가 곧 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복구를 중심으로 묘지공원 유치에 나섰지만 시민과의 조화로운 협상이 되지않고 있어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을 실현이 시민의식의 선진화와 홍보 교육이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함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넘비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의 협상을 위해 많은 지식기반과 협조체계를 갖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이러한 운동과 의식계몽이 지속되어야만 우리 모두에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사후의 편안함을 받아들일 것이다.

참고문헌

- LG상록재단(2000), 바람직한 장묘시설을 생각해 본다.
- 경인일보(2000.7), 한국형 장묘문화 만들어야.
- 경향신문(2000.10), 사이버 추모사이트 열풍.
- 국민일보(2000.10), 장묘문화 이대론 안된다.
- 국민일보(2000.11), 인천 납골당 2만기 설치 및 화장장 건립.
- 국민일보(2000.12), 경기/고양·파주지역 목사 대부분 화장 찬성.
- 국민일보(2000.7), 기독교 장례문화협의회 창립.
- 국민일보(2000.8), 경기도내 공공묘지 '재개발'.
- 김경혜(1997), 서울시 장묘제도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영철(1999), 장묘문화 개혁과 언론.
- 김재보건복지부(1997), 외국의 장묘시설 연수보고서(일본과 미국 중심).
- 내외경제(2000.9), 분묘장산을 금수장산으로.
- 대한매일(2000.12), 공원 겸한 화장(火葬)시설 만든다.
- 대한매일(2000.12), 남비에 발목잡힌 납골당 건립.
- 대한매일(2000.7), 인터넷 추모사이트 붐빈다.
- 동아일보(2000.10), 喪制불편 가능한한 적게.
- 매일경제(2000.8), 납골당, 화장장, 아무데나 설치 가능.
- 매일경제(2000.9), 서울시 설문조사, 화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라져.
- 매일경제(2000.9), 화장중심 장묘문화 친근감 느껴진다.
- 문화일보(2000.2), 백제화장장 예약제 내달부터 시행키로.
- 문화일보(2000.3), 납골당-장례식장 '문화공간' 변신.
- 문화일보(2000.3), 서울시민 화장을 50% 넘어서.
- 문화일보(2000.3),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 문화일보(2000.8), 서울시립묘지 유가족 편지集 펴낸 시설공단 이호조 이사장.
- 문화일보(2000.8), 유리납골당 인기.
- 박시익(1999), 풍수지리로 분석한 산소문화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1999),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2000),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서울 시민 토론회.
-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2000), 올바른 장묘정책의 모색을 위한 공청회.
- 서울경제(2000.9), SK그룹, 장묘문화 개선 잇단 출선.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8),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9), 99 서울시립승화원(화장장) 이용자 설문조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2000년 서울시립승화원(화장장) 이용자 설문조사결과.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 세계일보(2000.3), 분묘없는 "매화같은 선비".
- 울산YMCA(2000),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보고서.
- 울산광역시(2000), 시정백서.

- 이필도(1999), 화장·납골시설의 확충 및 지역사회 개발.
- 장철수(1999), 화장의 생활문화적 의미.
- 전남일보(2000.7), 납골묘 상설전시장 개장.
- 정민자(1998), 장묘문화에 대한 주민의식, 한국장묘연구회 제4권.
- 조선일보(2000.12), 서울에 대규모 '납골공원'.
- 조선일보(2000.4), '사이버납골당'문열어 파주시 광탄면 제2묘지內.
- 조선일보(2000.5), 21세기엔 장례문화도 과학시대.
- 조선일보(2000.6), '화장예약제' 유족들로부터 호응 얻어.
- 조선일보(2000.8), '추모의 집' 유족들 애절한 사연 책으로.
- 중(1999), 서울특별시 장묘문화 개선정책 추진방향.
- 한겨레신문(2000.1), 국민 72%, 화장문화 선호.
- 한겨레신문(2000.1), 납골당 10년 뒤 8만기 모자라.
- 한겨레신문(2000.11), 유명도 업적도 묻은 조출한 '땅속'.
- 한겨레신문(2000.11), 케네디묘 치장 않고 이름만.
- 한국경제(2000.8), 화장문화 급속 확산... 서울/부산 50% 넘어.
- 한국일보(2000.11), 개인묘지 면적 30㎡ 이하로.
- 한국일보(2000.2), '시한부 매장제' 내년1월 시행.
- 한국일보(2000.9), 남성보다 여성이 화장선호.